

# 2021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I. 예산개요

### 1. 세입예산

○ 해당 사항 없음.

### 2. 세출예산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21년 세출예산은 12억 4천 8백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5억 5천 6백만원 대비 19.8% 감액된 수준이며,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한 최종예산 15억 4천 1백만원 대비 19.0%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 구 분    | 2020년도    |           | 2021년도    | 2020년대비<br>증 감 |          | 증감률   |       |
|--------|-----------|-----------|-----------|----------------|----------|-------|-------|
|        | 당초        | 최종        |           | 당초             | 최종       | 당초    | 최종    |
| 총 계    | 1,555,785 | 1,540,785 | 1,248,207 | △307,578       | △292,578 | △19.8 | △19.0 |
| 사 업 비  | 1,415,399 | 1,400,399 | 1,102,945 | △312,454       | △297,454 | △22.1 | △21.2 |
| 행정운영경비 | 140,386   | 140,386   | 145,262   | 4,876          | 4,876    | 3.5   | 3.5   |

〈2021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9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 정책/단위/세부사업별 | 2020 예산 |       | 2021<br>예산 | 2020년 대비<br>증감 |      | 증감률   |       |
|-------------|---------|-------|------------|----------------|------|-------|-------|
|             | 당초      | 최종    |            | 당초             | 최종   | 당초    | 최종    |
| 합 계         | 1,556   | 1,541 | 1,248      | △308           | △293 | △19.8 | △19.0 |

| 정책/단위/세부사업별              | 2020 예산 |       | 2021 예산 | 2020년 대비 증감 |      | 증감률   |       |
|--------------------------|---------|-------|---------|-------------|------|-------|-------|
|                          | 당초      | 최종    |         | 당초          | 최종   | 당초    | 최종    |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 1,416   | 1,401 | 1,103   | △313        | △298 | △22.1 | △21.2 |
| 민생사법경찰업무활성화              | 1,416   | 1,401 | 1,103   | △313        | △298 | △22.1 | △21.2 |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 62      | 47    | 43      | △19         | △4   | △31.6 | △9.7  |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 1,165   | 1,165 | 897     | △268        | △268 | △23.0 | △23.0 |
|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88     | 188   | 163     | △25         | △25  | △13.3 | △13.3 |
| 행정운영경비                   | 140     | 140   | 145     | 5           | 5    | 3.5   | 3.5   |
| 기본경비                     | 140     | 140   | 145     | 5           | 5    | 3.5   | 3.5   |

## II. 검토의견

### 1. 세출예산 검토

- 민생사법경찰단 2021년 세출 예산안은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4천3백만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8억9천7백만원),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1억6천3백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1억 3백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천 5백만원 등으로 전년(15억4천1백만원) 대비 19% 감액한 12억 4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

| 정책/단위/세부사업별              | 2020 예산   |           | 2021 예산   | 최종예산 대비  |       |
|--------------------------|-----------|-----------|-----------|----------|-------|
|                          | 당초        | 최종        |           | 증 감      | 비율(%) |
| 총 계                      | 1,555,785 | 1,540,785 | 1,248,207 | △292,578 | △19.0 |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 1,415,399 | 1,400,399 | 1,102,945 | △297,454 | △21.2 |
| 민생사법경찰업무활성화              | 1,415,399 | 1,400,399 | 1,102,945 | △297,454 | △21.2 |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 61,805    | 46,805    | 42,285    | △4,520   | △9.7  |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 1,165,323 | 1,165,323 | 896,877   | △268,446 | △23.0 |
|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88,271   | 188,271   | 163,783   | △24,488  | △13.0 |
| 행정운영경비                   | 140,386   | 140,386   | 145,262   | 4,876    | 3.5   |
| 기본경비                     | 140,386   | 140,386   | 145,262   | 4,876    | 3.5   |
| 기본경비                     | 140,386   | 140,386   | 145,262   | 4,876    | 3.5   |

### 가.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에 의한 직무수행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전년도 최종예산(4천7백만원) 대비 9.7% 감액한 4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 분           | 2020년          |                | 2021예산(안)<br>(B) | 증감 (B-A)        | (B-A)*100/A |
|---------------|----------------|----------------|------------------|-----------------|-------------|
|               | 본예산            | 최종예산 (A)       |                  |                 |             |
| 계             | (x-)<br>61,805 | (x-)<br>46,805 | (x-)<br>42,285   | (x-)<br>△4,520  | (x-)<br>△10 |
| 사무관리비         | (x-)<br>37,805 | (x-)<br>37,805 | (x-)<br>18,285   | (x-)<br>△19,520 | (x-)<br>△52 |
| 국외업무여비        | (x-)<br>15,000 | (x-)<br>0      | (x-)<br>15,000   | (x-)<br>15,000  | (x-)<br>0   |
| 시책추진업무<br>추진비 | (x-)<br>9,000  | (x-)<br>9,000  | (x-)<br>9,000    | (x-)<br>0       | (x-)<br>0   |

#### 〈 세부 산출내역 〉

| 과목구분  | 2020년 본예산                               | 2021년 예산(안)                             |
|-------|---|---|
| 사무관리비 | ○ 강사료 = 7,695천원                         | ○ 강사료 = 6,525천원                         |
|       | - 강사료(기본직무교육) = 4,770천원                 | - 강사료(기본직무교육) = 4,770천원                 |
|       | ▷ 강사료(일반1급)<br>360,000원 * 7명 = 2,520천원  | ▷ 강사료(일반1급)<br>360,000원 * 7명 = 2,520천원  |
|       | ▷ 강사료(일반2급)<br>225,000원 * 10명 = 2,250천원 | ▷ 강사료(일반2급)<br>225,000원 * 10명 = 2,250천원 |
|       | - 강사료(분야별핵심교육) = 2,925천원                | - 강사료(분야별핵심교육) = 1,755천원                |
|       | ▷ 강사료<br>360,000원 * 5회 = 1,800천원        | ▷ 강사료<br>360,000원 * 3회 = 1,080천원        |
|       | ▷ 강사료<br>225,000원 * 5회                  | ▷ 강사료<br>225,000원 * 3회                  |

| 과목구분      | 2020년 본예산   | 2021년 예산(안)                                      |
|-----------|---|--|
|           | = 1,125천원   | = 675천원  |
|           | ○ 원고료<br>12,000원*5시간*6매<br>= 360천원  | ○ 원고료<br>12,000원*5시간*6매<br>= 360천원               |
|           | ○ 교재인쇄비<br>= 8,250천원  | ○ 교재인쇄비<br>= 7,500천원                             |
|           | - 교재인쇄비(직무교육 등)<br>25,000원*135명*2권<br>= 6,750천원                               | - 교재인쇄비(직무교육 등)<br>25,000원*135명*2권<br>= 6,750천원  |
|           | - 교재인쇄비(핵심교육 등)<br>15,000원*100명<br>= 1,500천원                                  | - 교재인쇄비(핵심교육 등)<br>15,000원*50명<br>= 750천원        |
|           | ○ 교육운영비<br>= 2,300천원  | ○ 교육운영비<br>= 3,900천원                             |
|           | - 기본직무교육<br>800,000원<br>= 800천원   | - 기본직무교육<br>3,000,000원<br>= 3,000천원              |
|           | - 분야별 핵심교육<br>150,000원*10회<br>= 1,500천원                                       | - 분야별 핵심교육<br>150,000원*6회<br>= 900천원             |
|           | ○ 기본직무교육 교육생 중식비<br>4,000원*130명*5일<br>= 2,600천원                               |  |
|           | ○ 직무공동연수<br>15,000,000원<br>= 15,000천원   |  |
|           | ○ 국외 통번역료 등<br>1,600,000원<br>= 1,600천원  |  |
|           | 증감사유  |  |
|           | ○ 코로나19 지속예정에 따른 분야별핵심교육 횟수 감소정(10회→6회) 및 직무공동연수비, 기본직무교육 교육생 중식비, 국외 통번역료 감액 |  |
| 국외업무여비    | ○ 해외 우수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br>15,000,000원<br>= 15,000천원                              | ○ 해외 우수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br>15,000,000원<br>= 15,000천원 |
|           | 증감사유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직무역량 강화 간담회<br>900,000원*10회<br>= 9,000천원                                    | ○ 직무역량 강화 간담회<br>900,000원*10회<br>= 9,000천원       |
|           | 증감사유  |  |

○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본직무교육, 분야별 핵심교육, 직무역량 강화 공동 연수 및 해외 선진 우수사례 학습 등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은 행정경찰로서 성과를 내기 위한 행정지식과 전문성은 물론 수사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바,

- 내실있는 직무교육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수사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직원들의 잦은 전보(자치구의 파견인력의 짧은 재직기간 등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및 제7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전보 제한 기간(2년, 전문관 3년) 미준수)로 전문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년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인력은 전년대비('19.9. 31명→'20.10. 26명) 5명이 감소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 인력증감현황

(단위 : 명)

| 구 분         | 출범전 | 출범후      |         |         |         |         |         | 증감  |            |
|-------------|-----|----------|---------|---------|---------|---------|---------|-----|------------|
|             |     | (15.11.) | (16.2.) | (16.3.) | (17.9.) | (18.1.) | (19.9.) |     | (20.10.현재) |
| 합계 (시+구 현원) | 108 | 122      | 119     | 113     | 105     | 96      | 93      | △15 |            |
| 시 인력        | 정원  | 45       | 53      | 57      | 56      | 63      | 65      | 68  | +23        |
|             | 현원  | 43       | 61      | 61      | 62      | 62      | 65      | 67  | +24        |
| 자치구 인력      | 현원  | 65       | 61      | 58      | 51      | 43      | 31      | 26  | △39        |

※ 인력감소 사유 : 각 자치구별 인력수급 어려움 및 파견희망직원 부재 등에 따른 자치구 파견 인력감소

〈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직원 및 자치구 파견인력 평균 재직기간 〉

○ 서울시 직원 평균 재직기간 : 2년 5개월

| 직급                            | 직렬   | 재직기간           |               |               |              |                | 비고 |
|-------------------------------|------|----------------|---------------|---------------|--------------|----------------|----|
|                               |      | 계              | 1년 미만         | 1~2년          | 2~3년         | 3년 이상          |    |
| *전체 평균: 2년5개월<br>(전문관: 5년5개월) |      | 67<br>(전문관 14) | 24<br>(전문관 0) | 11<br>(전문관 0) | 6<br>(전문관 0) | 26<br>(전문관 14) |    |
| 3급                            | 행정   | 1              | 1             |               |              |                |    |
| 4급                            | 행정   | 2              | 1             | 1             |              |                |    |
| 5급                            | 행정   | 7<br>(전문관 1)   | 3             | 1             | 1            | 2<br>(전문관 1)   |    |
|                               | 보건   | 4<br>(전문관 1)   | 2             |               |              | 2<br>(전문관 1)   |    |
|                               | 약무   | 1              | 1             |               |              |                |    |
|                               | 임상병리 | 1              | 1             |               |              |                |    |
|                               | 환경   | 1              | 1             |               |              |                |    |
| 6급                            | 행정   | 11<br>(전문관 3)  | 3             | 2             | 1            | 5<br>(전문관 3)   |    |
|                               | 세무   | 1              | 1             |               |              |                |    |
|                               | 전산   | 2<br>(전문관 1)   |               | 1             |              | 1<br>(전문관 1)   |    |
|                               | 보건   | 8<br>(전문관 3)   | 1             | 1             | 1            | 5<br>(전문관 3)   |    |
|                               | 약무   | 2<br>(전문관 1)   | 1             |               |              | 1<br>(전문관 1)   |    |
|                               | 환경   | 4<br>(전문관 2)   |               | 1             |              | 3<br>(전문관 2)   |    |

|     |      |                         |   |   |   |                         |  |
|-----|------|-------------------------|---|---|---|-------------------------|--|
|     | 지적   | 1                       |   |   | 1 |                         |  |
| 7급  | 행정   | 9                       | 4 | 3 |   | 2                       |  |
|     | 사회복지 | 1                       | 1 |   |   |                         |  |
|     | 기계   | <sup>2</sup><br>(전문관 1) |   |   | 1 | <sup>1</sup><br>(전문관 1) |  |
|     | 보건   | <sup>3</sup><br>(전문관 1) |   |   |   | <sup>3</sup><br>(전문관 1) |  |
|     | 환경   | 1                       | 1 |   |   |                         |  |
|     | 사무운영 | 1                       | 1 |   |   |                         |  |
|     | 운전   | 2                       |   | 1 | 1 |                         |  |
| 9급  | 전산   | 1                       | 1 |   |   |                         |  |
| 임기제 | 행정   | 1                       |   |   |   | 1                       |  |

○ 자치구 파견 직원 평균 재직기간 : 2년 6개월

| 직급                   | 직렬   | 재직기간      |          |          |          |          | 비고 |
|----------------------|------|-----------|----------|----------|----------|----------|----|
|                      |      | 계         | 1년 미만    | 1~2년     | 2~3년     | 3년 이상    |    |
| <b>*전체평균: 2년 6개월</b> |      | <b>26</b> | <b>7</b> | <b>8</b> | <b>3</b> | <b>8</b> |    |
| 6급                   | 행정   | 13        | 4        | 6        | 1        | 2        |    |
|                      | 세무   | 1         |          | 1        |          |          |    |
| 7급                   | 행정   | 3         | 1        |          |          | 2        |    |
|                      | 사회복지 | 1         |          | 1        |          |          |    |
|                      | 세무   | 2         |          |          | 2        |          |    |
|                      | 보건   | 1         | 1        |          |          |          |    |
|                      | 간호   | 1         |          |          |          | 1        |    |
|                      | 속기   | 1         |          |          |          | 1        |    |
| 8급                   | 행정   | 3         | 1        |          |          | 2        |    |

- 더욱이, 수사력의 노하우를 쌓으려면 장기간 근무가 필요함에도 2020년 민생사법경찰단 현원 93명 중 1년 미만 직원은 31명(33%)인바, 1~2년 직원 19명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53.8%(50명)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수사의 전문성을 우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수사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나 2021년 직무교육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속예정에 따른 분야별 핵심 교육 횟수를 감소(10회→6회)하고 있는바, 수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교육 확대 관련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2021년 직무교육 추진계획 〉

#### □ 세부 실시계획

##### ① 기본 직무교육

- 목 적 : 체계적 수사실무 학습을 통한 수사관 수사역량 강화
- 강의내용 : 기본적인 수사실무 및 최신 범죄동향, 수사기법 등
  - 특사경 제도 이해 및 관련법(형법, 형사소송법) 체계적 학습
  - 수사정보 수집, 수사보고서 작성, 압수수색 검증 등 수사실무 교육
  - 강의과목에 인권교육을 포함, 전 직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
- 강의구성 : 전입자 대상 '기초반'과 기존 수사관을 위한 '심화반'으로 구분
- 일 정 : '21년 1월 4주차 예정(기초반 2일, 심화반 3일)
- 대 상 : 민사단 수사관 전원 및 타 부서(자치구 포함) 특사경 희망자
- 소요예산 : 14,810천원

▲ 강사료 : 4,700천원, ▲ 원고료 : 360천원, ▲ 교육운영비 : 3,000천원, ▲ 인쇄비 : 6,750천원

##### ② 분야별 핵심교육

- 목 적 : 수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직무교육 실시
- 강의내용 : 분야별 수사기법, 범죄동향 등 수사 관련 사항
  - 압수수색 및 영장청구 관련 실무, 금융계좌 분석 등 수사실무 교육(4회)
  - 수사 관련 인권침해 사례(1회), 성별에 따른 수사요령(1회) 등 소양교육 병행
- 일 정 : 총 6회 실시
- 대 상 : 민사단 전 수사관 중 희망자(회당 30명 이내)
  - 강사 동의를 강의료 영상으로 촬영, 전체 수사관 공유, 비대면교육 추가 실시
- 소요예산 : 3,405천원(회당 평균 567천원)

▲ 강사료 : 1,755천원, ▲ 교육운영비 : 900천원, ▲ 인쇄비 : 750천원

※ '21년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사업 선정으로 성별을 고려한 수사교육 실시

▲ 목 적 : 각 성별에 맞는 특화교육 실시

· 예시 : 여성, 남성 피의자 특성에 따른 심문, 수사관 성별에 따른 피의자 대응 등

▲ 목 표 : 2회 실시(기본직무교육 1회, 분야별 핵심교육 1회 편성)

③ 내부전문가 활용 자체 직무교육

○ 목 적 : 전문관 등 내부전문가를 활용한 실무 중심의 교육 실시

○ 강의내용 : 각종 수사 관련 시스템 사용법 및 실무중심의 수사 노하우 전수

- 수사정보포털 등 각종시스템 사용법 및 수사절차, 문제해결 등 실무 중심의 강의

○ 일 정 : 총 2회 실시(반기별 1회)

○ 대 상 : 민사단 수사관 중 희망자(회당 30명 이내)

○ 소요예산 : 없음(내부강사 강의료는 인력개발과 지원 예산 활용)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 직무교육 실적 〉

|        |  |
|--------|--|
| 2018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직무교육 1회, 102명</li> <li>○ 직무역량 공동연수 1회, 인원 89명</li> <li>○ 시구 합동 워크숍 1회, 인원 136명</li> <li>○ 월별 직무교육 : 7회, 인원 544명</li> <li>○ 수사팀별 직무교육 : 16회, 인원 197명</li> </ul>                         |
| 2019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직무교육 1회, 113명</li> <li>○ 과학수사 전문가 양성(5일) 16명</li> <li>○ 월별 직무교육 : 10회, 인원 734명</li> <li>○ 수사팀별 직무교육 : 5회, 79명</li> <li>○ 직무역량 공동연수 : 1회, 인원 89명</li> <li>○ 수사공조 위한 국외연수 : 3회</li> </ul> |
| 2020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직무교육 1회, 109명</li> <li>○ 전입직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2회, 17명</li> <li>○ 월별 직무교육 : 3회 37명</li> <li>○ 수사팀별 직무교육 : 1회, 4명</li> </ul>  |

- 또한, 동 사업중 ‘국외업무여비’는 1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매년 같은 예산(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실적이 저조하였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외업무여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63개국으로, 2021년에도 상당기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 우수 특사경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출장의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0년 11월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63개국이라고 함. 55개 국가·지역은 입국금지 조치, 10개 국가·지역은 격리 조치, 98개 국가·지역은 검역감화 및 권고 사항 등, 24개 유럽 국가·지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하였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s://www.0404.go.kr/dev/main.mofa>), 최종방문 2020년 11월 12일)

〈 국외업무여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 구분    | 세부사업<br>(통계목)                 | 세부내역                  | 편성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불용률   |
|-------|-------------------------------|-----------------------|----------------------------|--------|-------|-------|
| 2018년 | 특별사법경찰<br>직무역량 강화<br>(국외업무여비) | 해외 우수 특사경<br>시스템 벤치마킹 | 15,000                     | 9,707  | 5,292 | 35.3% |
| 2019년 | 특별사법경찰<br>직무역량 강화<br>(국외업무여비) | 해외 우수 특사경<br>시스템 벤치마킹 | 15,000                     | 12,233 | 2,767 | 18.5% |
| 2020년 | 특별사법경찰<br>직무역량 강화<br>(국외업무여비) | 해외 우수 특사경<br>시스템 벤치마킹 | 15,000<br>(제2회 추경<br>전액감액) | 0      | 0     | 0     |

나.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현장 활동 여비, 행정장비 등의 구매 등을 위해 전년 대비 23%(11억6천5백만원) 감액한 8억 9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 2020년             |                   | 2021예산(안)<br>(B) | 증감 (B-A)         | (B-A)*100/A |
|----------------|-------------------|-------------------|------------------|------------------|-------------|
|                | 본예산               | 최종예산 (A)          |                  |                  |             |
| 계              | (x-)<br>1,165,323 | (x-)<br>1,165,323 | (x-)<br>896,877  | (x-)<br>△268,446 | (x-)<br>△23 |
| 기간제근로자 등<br>보수 | (x-)<br>7,250     | (x-)<br>7,250     | (x-)<br>7,373    | (x-)<br>123      | (x-)<br>2   |
| 사무관리비          | (x-)<br>445,093   | (x-)<br>445,093   | (x-)<br>287,478  | (x-)<br>△157,615 | (x-)<br>△35 |
| 공공운영비          | (x-)<br>77,980    | (x-)<br>77,980    | (x-)<br>58,316   | (x-)<br>△19,664  | (x-)<br>△25 |
| 국내여비           | (x-)<br>342,000   | (x-)<br>342,000   | (x-)<br>270,720  | (x-)<br>△71,280  | (x-)<br>△21 |
| 시책추진업무<br>추진비  | (x-)<br>21,000    | (x-)<br>21,000    | (x-)<br>18,000   | (x-)<br>△3,000   | (x-)<br>△14 |
| 특정업무경비         | (x-)<br>252,000   | (x-)<br>252,000   | (x-)<br>240,240  | (x-)<br>△11,760  | (x-)<br>△5  |

|              |                |                |                |                |             |
|--------------|----------------|----------------|----------------|----------------|-------------|
| 재료비          | (x-)<br>15,000 | (x-)<br>15,000 | (x-)<br>12,750 | (x-)<br>△2,250 | (x-)<br>△15 |
| 배상금등         | (x-)<br>1,000  | (x-)<br>1,000  | (x-)<br>1,000  | (x-)<br>0      | (x-)<br>0   |
| 자산및물품<br>취득비 | (x-)<br>4,000  | (x-)<br>4,000  | (x-)<br>1,000  | (x-)<br>△3,000 | (x-)<br>△75 |

- 사무관리비 감액 :
  - 최근 5년 평균 자치구 파견인원에 따른 기획단속 등 매식비(△42,720천원) 및 수사팀 운영비(△2,585천원) 절감
  - 2년 장기계약 및 임차차량 3대 감소(운영실적 반영하여 일부 통합운영)에 따른 차량 임차료 절감(△32,400천원 감액)
  - 코로나19 지속예정에 따른 체력단련실(△5,100천원), 정책자문단 운영비(△7,500천원) 감액
  - 피복비(△37,310천원 감액), 홍보비(△25,000천원 감액), 압수물폐기비용(△1,000천원 감액), 수사업무매뉴얼 제작비(△1,000천원 감액) 예산감액
- 공공운영비 감액 :
  - 차량 유류비(△18,720천원) 및 현장수사팀 운영비(△1,444천원) 절감 : 운영실적 반영 조정으로 수사차량 4대 감소(23대 → 19대 = 4대 감소 : 차차 1대 관리전환, 임차차량 3대 감소)에 따른 감액
- 국내여비 감액 :
  - 전체 정원 기준 및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여비(△71,280천원) 감액
- 시책추진비 감액 :
  - 서울시 예산상황 감안, 시책추진비(△3,000천원) 감액
- 특정업무경비 감액 :
  - 5급 이하 현원 반영한 특정업무경비 (△11,760천원) 감액
- 재료비 감액 :
  -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통식품 및 의약품 유상수거 감소에 따른 재료비(△2,250천원) 감액
-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액 :
  - 수사장비 수요조사를 통한 2팀 우선 구매 후, 차후 순차적 구매예정에 따른 예산감액(△3,000천원)

○ 동 사업에서 최근 5년 평균 자치구 파견인원 감소에 따른 매식비(62,400천원 →19,680천원), 전체 정원 기준 및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여비(342,000천원 →270,720천원), 5급 이상 현원을 반영한 특정업무경비(252,000천원→240,240천원) 감액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과목구분   | 2020년 본예산                                       | 2021년 예산(안)   |
|--------|---|---|
| 사무관리비  | ○ 기획단속 등 매식비<br>80,000원*65명*12월<br>= 62,400천원   | ○ 기획단속 등 매식비<br>80,000원*41명*12월*50%<br>= 19,680천원   |
| 국내여비   | ○ 현장활동 여비<br>20,000원*95명*15일*12월<br>= 342,000천원 | ○ 현장활동 여비<br>20,000원*94명*15일*12월*80%<br>= 270,720천원 |
|        | 증감사유  |   |
|        | ○ 전체 인원 기준 및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여비 감액               |   |
| 특정업무경비 | ○ 특사경 특정업무 경비                                   | ○ 특사경 특정업무 경비                                       |

| 과목구분 | 2020년 본예산                        | 2021년 예산(안)                          |
|------|----------------------------------|--------------------------------------|
|      | 200,000원*105명*12월<br>= 252,000천원 | 200,000원*91명*12월*110%<br>= 240,240천원 |
|      | 증감사유                             |                                      |
|      | ○ 5급 이하 인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감액         |                                      |

○ 또한,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차량임차료는 필요 차량의 적정 임차(21대 →19대)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필요 차량 임차와 2년 장기계약에 따라 차량 임차료(175,800천원→143,400천원)를 절감하였음.

- 다만, 차량 임대차 계약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등 효율적인 수사차량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2020년 본예산   | 2021년 예산(안)   |
|-------|---|---|
|       | ○ 차량임차료<br>= 175,800천원  | ○ 차량임차료<br>= 143,400천원  |
| 사무관리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0CC미만<br/>530,000원*5대*12월<br/>= 31,800천원</li> <li>- 2000cc미만<br/>600,000원*1대*12월<br/>= 7,200천원</li> <li>- 승용대형<br/>800,000원*9대*12월<br/>= 86,400천원</li> <li>- 승합차량<br/>700,000원*6대*12월<br/>= 50,400천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0CC미만<br/>500,000원*5대*12월<br/>= 30,000천원</li> <li>- 2000cc미만<br/>600,000원*1대*12월<br/>= 7,200천원</li> <li>- 승용대형<br/>750,000원*9대*12월<br/>= 81,000천원</li> <li>- 승합차량<br/>700,000원*3대*12월<br/>= 25,200천원</li> </ul> |

###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차량 임차현황 〉

| 연도   | 계약업체         | 차량대수 | 계약금액<br>(예산액)        | 계약기간                          | 계약방식   | 차량종류                     |    |     |
|------|--------------|------|----------------------|-------------------------------|--------|--------------------------|----|-----|
|      |              |      |                      |                               |        | 승차인원                     | 경유 | 취발유 |
| 2018 | 삼보렌터카<br>(주) | 19대  | 133,676<br>(157,680) | '18.1월 ~<br>'18.12월<br>(12개월) | 일반공개경쟁 | 5인승 6<br>9인승 9<br>11인승 4 | 13 | 6   |

|      |               |     |                      |                               |        |                           |    |   |
|------|---------------|-----|----------------------|-------------------------------|--------|---------------------------|----|---|
| 2019 | 퍼시픽<br>렌터카(주) | 21대 | 145,464<br>(177,600) | '19.1월 ~<br>'19.12월<br>(12개월) | 일반공개경쟁 | 5인승:8<br>9인승:10<br>11인승:3 | 13 | 8 |
| 2020 | 퍼시픽<br>렌터카(주) | 19대 | 165,524<br>(175,800) | '20.1월 ~<br>'20.12월<br>(12개월) | 일반공개경쟁 | 5인승:6<br>9인승:10<br>11인승:3 | 13 | 6 |

- 동 사업 중 민생사법경찰단 정책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 2020년 본예산  | 2021년 예산(안)                                   |
|-------|--|---|
| 사무관리비 | ○ 민생사법경찰단 정책자문단 운영<br>10,000,000<br>= 10,000천원     | ○ 민생사법경찰단 정책자문단 운영<br>2,500,000원<br>= 2,500천원 |
|       | 증감사유   |   |
|       | ○ <u>코로나19 지속예정에 따른</u> 체력단련실, <u>정책자문단 운영비 감액</u> |   |

- 민생사법경찰단은 특사경 수사전담 기관으로 ① 객관적인 인권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② 특사경 수사방향, ③ 자치경찰제와 협업 사항 발굴 등 특사경 발전방안 강구를 위한 외부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1년 T/F(Task Force)형 자문단으로 운영하고,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향후 필요시 위원회 설치를 검토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2020년 예산안 검토보고에서 “본 정책자문단은 법령(「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과 조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다만, 2020년 정책자문단을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책자문단 미구성으로 전액 불용예정 인바, 예산의 불용은 금액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은 철저한 사업수립 계획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  |
|---|--|
| <p><b>V '21년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b></p> <p><input type="checkbox"/> 정책자문단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 상 : ① 수사, ② 인권, ③ 특별사법경찰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축</li> <li>○ 구성인원 : 총 6명(수사, 인권, 특별사법경찰 분야별 2명)</li> </ul> <p>▶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대비하여 최소 규모의 자문단 구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기 : 1년 (연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F(Task Force)형 자문단임을 감안, 임기는 1년으로 정함</li> <li>- 자문단 구성 이후 위원 사임 등으로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자문단 임기를 감안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li> <li>- 자문위원의 임기만료 후 신규 자문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기존 자문위원이 그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li> </ul> </li> <li>○ 분과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① 수사, ② 인권, ③ 특별사법경찰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li> </ul> </li> <li>○ 기타 실무적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민생수사1반장)과 서기(담당사무관) 지정</li> </ul> <p><input type="checkbox"/> 정책자문단 운영(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회의 : 연 1회 개최 ('21년 상반기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자문단이 참여하여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사업 및 현안 과제 논의</li> </ul> </li> <li>○ 수시회의 : 필요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회의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 발생 등 필요시 분과별 회의 개최</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는 자문단의 성격을 감안하여, 민생사법경찰단장이 소집</li> <li>- 자문단 회의 주재자는 논의 현안 및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li> <li>- 필요한 경우 관계인(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참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li> <li>- 회의 실무지원 : 민생수사1반장(회의자료, 회의결과 행·재정사항 조치 등)</li> </ul> </li> </ul> <p><b>VI 행정사항</b></p> <p><input type="checkbox"/> '21년 정책자문단 운영 소요예산 : 25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의참석수당 : 18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1회) : 90만원(15만원*6명*1회), 임시(1회) : 90만원(15만원*6명*1회)</li> <li>※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예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2시간 기준)</li> </ul> </li> <li>② 사전검토수당 : 6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1회) : 30만원(5만원*6명*1회), 임시(1회) : 30만원(5만원*6명*1회)</li> <li>※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예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1시간 기준)</li> </ul> </li> <li>③ 기타 회의운영비 : 10만원 (자료집 제작 등)</li> </ul> |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본 사업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유지관리, 조사실진술녹화 및 상시녹화 시스템 유지관리, 온라인 수사정보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160만원)’와 ‘공공운영비(1억6천2백만원)’가 편성되어 있는바, 수사정보포털 시스템 기능개선 종료와 추가 장비 도입 예산 감액에 따라 전년(1억8천9백만원) 대비 13% 감액된 1억 6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구 분   | 2020년           |                 | 2021예산(안)<br>(B) | 증감 (B-A)        | (B-A)*100/A  |
|-------|-----------------|-----------------|------------------|-----------------|--------------|
|       | 본예산             | 최종예산 (A)        |                  |                 |              |
| 계     | (x-)<br>188,271 | (x-)<br>188,271 | (x-)<br>163,783  | (x-)<br>△24,488 | (x-)<br>△13  |
| 사무관리비 | (x-)<br>3,800   | (x-)<br>3,800   | (x-)<br>1,600    | (x-)<br>△2,200  | (x-)<br>△58  |
| 공공운영비 | (x-)<br>107,831 | (x-)<br>107,831 | (x-)<br>162,183  | (x-)<br>54,352  | (x-)<br>50   |
| 전산개발비 | (x-)<br>9,208   | (x-)<br>9,208   | (x-)<br>0        | (x-)<br>△9,208  | (x-)<br>△100 |

|          |                |                |           |                 |              |
|----------|----------------|----------------|-----------|-----------------|--------------|
| 자산및물품취득비 | (x-)<br>67,432 | (x-)<br>67,432 | (x-)<br>0 | (x-)<br>△67,432 | (x-)<br>△100 |
|----------|----------------|----------------|-----------|-----------------|--------------|

**< 세부 산출 내역 >**

| 과목구분  | 2020년 본예산   | 2021년 예산(안)   |
|-------|---|---|
| 사무관리비 | ○ 수사전산장비 수리비<br>300,000원*6회<br>= 1,800천원                  | ○ 제안서평가위원 수당<br>200,000원 * 8명<br>= 1,600천원                    |
|       | ○ 압수물 봉인봉투 제작<br>4,000원*500개<br>= 2,000천원                 |   |
|       | 증감사유  |   |
|       | ○ 수사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br>○ 소모품 비용 감액          |   |
| 공공운영비 | ○ 디지털 포렌식 장비 유지관리<br>= 27,251천원                           | ○ 디지털 포렌식 장비 유지관리<br>= 30,323천원                               |
|       | - 분석서버<br>13,200,000원*1대*8%*(6/12개월)<br>= 528천원           | - 분석서버<br>13,200,000원*1대*8%<br>= 1,056천원                      |
|       | - 노트북<br>1,870,000원*2대*8%<br>= 300천원                      | - 노트북<br>1,870,000원*2대*8%<br>= 300천원                          |
|       | - 외장하드<br>247,500원*4대*8%<br>= 80천원                        | - 외장하드<br>247,500원*4대*8%<br>= 80천원                            |
|       | - 디스크증거복제<br>7,218,750원*1대*8%<br>= 578천원                  | - 디스크증거복제<br>7,218,750원*1대*8%<br>= 578천원                      |
|       | - GPS 시계<br>1,407,406원*1대*8%<br>= 113천원                   | - GPS 시계<br>1,407,406원*1대*8%<br>= 113천원                       |
|       | - NAS<br>1,910,051원*1대*8%*(6/12개월)<br>= 77천원              | - NAS<br>1,910,051원*1대*8%<br>= 153천원                          |
|       | - 서버용 증거분석 S/W<br>87,999,440원*15%*1식<br>= 13,200천원        | - 서버용 증거분석 S/W<br>87,999,440원*15%*1식<br>= 13,200천원            |
|       | - 현장용 증거수집 및 분석 S/W<br>82,494,720원*15%*1식<br>= 12,375천원   | - 현장용 증거수집 및 분석 S/W<br>82,494,720원 * 1식 * 15%<br>= 12,375천원   |
|       | ○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유지관리<br>= 1,841천원                       | - 디지털증거 분석용 S/W(Encase)<br>7,100,000원 * 1식 * 25%<br>= 1,775천원 |
|       | - 디지털증거팩변환장비(DEP KIOSK)<br>17,909,100원*1대*8%<br>= 1,433천원 | - 쓰기방지장치<br>1,100,000원 * 3대 * 20% *<br>(9/12)개월<br>= 495천원    |

| 과목구분 | 2020년 본예산  | 2021년 예산(안)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연계서버<br/>5,089,821원*1대*8%<br/>= 408천원</li> <li>○ 조사실진술녹화 및 상시녹화 시스템유지관리<br/>= 1,587천원</li> <li>- 진술녹화시스템<br/>5,451,420원*3대*8%*(2/12)개월<br/>= 219천원</li> <li>- (신)진술녹화시스템<br/>4,098,120원*7대*8%*(6/12)개월<br/>= 1,148천원</li> <li>- DVR(영상저장장비)<br/>1,122,000원*1대*8%<br/>= 90천원</li> <li>- 카메라<br/>147,500원*11대*8%<br/>= 130천원</li> <li>○ 범죄수사자료 온라인 조회단말기 전용회선운영<br/>= 4,852천원</li> <li>- KT전용회선, VPN, 라우터장비 사용료<br/>404,330원*12월<br/>= 4,852천원</li> <li>○ 인공지능 범죄정보 수집 및 활용 시스템 유지관리<br/>275,000,000원*15%<br/>= 41,250천원</li> <li>○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유지관리<br/>207,000,000원*15%<br/>= 31,050천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채증패키지<br/>3,300,000원 * 1대 * 8% * (9/12)개월<br/>= 198천원</li> <li>○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유지관리<br/>= 1,841천원</li> <li>- 디지털증거팩변환장비(DEP KIOSK)<br/>17,909,100원*1대*8%<br/>= 1,433천원</li> <li>-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연계서버<br/>5,089,821원*1대*8%<br/>= 408천원</li> <li>○ 조사실진술녹화 및 상시녹화 시스템유지관리<br/>= 3,393천원</li> <li>- (신)진술녹화시스템<br/>4,015,000원 * 3대 * 8% * (9/12)개월<br/>= 723천원</li> <li>- 진술녹화시스템<br/>4,098,120원 * 7대 * 8%<br/>= 2,295천원</li> <li>- 원격뷰어 S/W<br/>275,000원 * 5식 * 15% * (9/12)개월<br/>= 155천원</li> <li>- DVR(영상저장장비)<br/>1,122,000원*1대*8%<br/>= 90천원</li> <li>- 카메라<br/>124,810원*13대*8%<br/>= 130천원</li> <li>○ 범죄수사자료 온라인 조회단말기 전용회선운영<br/>= 4,852천원</li> <li>- KT전용회선, VPN, 라우터장비 사용료<br/>404,330원*12월<br/>= 4,852천원</li> <li>○ 온라인 수사정보 분석시스템 유지관리<br/>275,000,000원*15%<br/>= 41,250천원</li> <li>○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유지관리<br/>= 46,711천원</li> <li>- 응용 S/W<br/>268,353,113원 * 14.75%<br/>= 39,583천원</li> </ul> |

| 과목구분     | 2020년 본예산   | 2021년 예산(안)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 S/W<br/>39,600,000원 * 18%<br/>= 7,128천원</li> <li>○ 온라인 수사정보 데이터수집비<br/>2,031,450원 * 12월<br/>= 24,378천원</li> <li>○ 기업정보시스템 사용료<br/>330,000원*12월<br/>= 3,960천원</li> <li>○ 계좌및통신자료분석 SW 유지관리<br/>= 5,475천원</li> <li>- 데이터연관분석 SW<br/>9,450,000원*1대*25%<br/>= 2,363천원</li> <li>- 데이터 표준화 SW<br/>15,560,000원*1대*20%<br/>= 3,112천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증감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 20년 신규 도입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장비 및 진술녹화장비 등 유상 유지관리 기간 도래에 따른 비용 증액</li> <li>○ 온라인 수사정보 데이터 수집 및 기업정보활용을 위한 이용료 증액</li> </ul> |
| 전산개발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개선<br/>9,208,000원<br/>= 9,208천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증감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예산 감액</li> </ul>  |   |
| 자산및물품취득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실 진술녹화장비 추가 교체<br/>= 19,536천원</li> <li>- 진술녹화장비<br/>4,730,000원*3대<br/>= 14,190천원</li> <li>- 원격지뷰어S/W<br/>660,000 원*5식<br/>= 3,300천원</li> <li>- 폐쇄망 구축<br/>2,046,000<br/>= 2,046천원</li> <li>○ 디지털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br/>= 47,896천원</li> <li>- 디지털포렌식 교차분석용 S/W<br/>7,150,000원*1식<br/>= 7,150천원</li> <li>- 데이터분석용 S/W<br/>30,828,660원*1식<br/>= 30,829천원</li> </ul> |   |



※ ‘AI 수사관’은 빅데이터 기술로 SNS나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중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그림을 실시간 수집·저장하는 시스템으로 민생침해 관련 범죄 정보를 색출하여 수사정보 활용.

- 다만,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AI 수사관 수사 실적은 본 시스템의 타당성 효과 검증을 위해 불법 다단계 수사 분야에 시범 적용하여 법인대표 등을 입건한 사례밖에 없는데, 관련 예산을 지속 편성할 것이 아니라 AI 수사관을 활용한 수사 실적 증대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0년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자료, 300면 참조

□ ‘민생범죄 수사지원 분석시스템’(이하 ‘AI 수사관’) 개요

○ 인터넷, SNS 등 사이버 상에 한글 파괴, 은어, 신조어, 기호 등을 사용한 불법 광고가 확산됨에 따라 머신러닝기술을 활용하여 게시글 분석 후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정보로 활용하는 시스템임

□ AI 수사관 평균 수사 기간, AI 수사관 수사 실적

○ AI 수사관은 인터넷상에서 수사에 대한 기초 단서 및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유의미한 지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평균 수사 기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움  
 ○ AI 수사관 수사 실적은 본 시스템의 타당성 효과 검증을 위해 불법 다단계 수사 분야에 시범 적용하여 법인대표 등을 입건한 사례가 있음

○ 또한, 동 사업 중 2019년, 2020년 신규 도입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장비의 유상 유지관리 기간 도래에 따른 비용 증액으로 디지털 포렌식 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디지털포렌식 센터 개요**

- ▶ 위 치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서울시청 남산별관 3층)
- ▶ 구 성 : 분석실과 참관실(약 33㎡) ※ 통제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 ▶ 운영인력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4명
- ▶ 개 소 일 : 2017. 8. 22.(화)

※ 디지털포렌식 수사 - 수사관련 증거를 획득, 분석하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함에 있어 PC, 핸드폰 등 모바일 정보를 수집·추출·분석하여 범죄의 단서 및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기법을 말함.

※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sup>1)</sup>으로 이메일, 문서파일 같은 디지털 증거물을 객관적(과학적)방식으로 입증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이용한 수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 동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2017년 8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소하였음.

-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디지털 수사장비와 디지털 수사는 증가하고 있지만 디지털 증거의 폐기에 관하여는 관련 지침(「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지침」 제25조)에서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유출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직결되고, 디지털 증거가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 따라 디지털 증거 폐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 디지털 포렌식 장비 현황 〉

| 구분  | 품명      | 제품명              | 수량 | 내용연수 | 구입시점       | 구입비         |
|-----|---------|------------------|----|------|------------|-------------|
| H/W | 분석서버    | HP Z640          | 1  | 6년   | 2017.06.26 | 13,200,000원 |
|     | 노트북     | HP 450G3         | 2  | 6년   | 2017.06.30 | 3,740,000원  |
|     | SSD외장하드 | EZSAVE 락다운       | 4  | 5년   | 2017.06.30 | 990,000원    |
|     | 증거복제장비  | Media Imager GM4 | 1  | 6년   | 2017.06.26 | 7,218,750원  |
|     | GPS시계   | 아이네트 GF2000      | 1  | 8년   | 2017.06.26 | 1,407,406원  |

1)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     |              |                      |   |    |            |             |
|-----|--------------|----------------------|---|----|------------|-------------|
|     | NAS          | Synology DS916       | 1 | 6년 | 2017.06.26 | 1,910,051원  |
|     | 모바일 증거 채증 장치 | FinalMobile Portable | 1 | 6년 | 2020.03.04 | 3,300,000원  |
|     | 휴대용 쓰기방지 장치  | TK8U                 | 3 | 6년 | 2020.03.04 | 3,300,000원  |
|     | 현장지원용 노트북    | LG 15UG590-KP7SKN    | 2 | 6년 | 2020.02.21 | 3,240,000원  |
| S/W | 서버용 모바일 분석   | FINALMobileForensics | 1 | 없음 | 2017.06.26 | 78,562,000원 |
|     | 서버용 디스크 분석   | FINALForensics       | 1 | 없음 | 2017.06.26 | 9,427,000원  |
|     | 현장용 모바일 분석   | FINALMobileLive      | 2 | 없음 | 2017.06.26 | 64,449,000원 |
|     | 현장용 디스크 분석   | FINALForensics Field | 4 | 없음 | 2017.06.26 | 18,045,720원 |
|     | 디지털 증거 분석    | Encase V8            | 1 | 없음 | 2020.03.03 | 7,100,000원  |

### 〈 최근 3년간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실적현황 〉

| 연 도             | 지원횟수 | 압수매체 건수 | 비 고   |
|-----------------|------|---------|---|
| 2018            | 64회  | 237개 매체 | 【2020년 지원횟수 감소사유】<br>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인지수사 건수 감소에 따른 지원횟수 감소 |
| 2019            | 50회  | 169개 매체 |   |
| 2020<br>(11월까지) | 12회  | 57개 매체  |   |

### 〈 디지털 증거폐기규정 비교 〉

|   |
|---|
| <p>「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지침」(제정 2017.8.21.)<br/>제25조(디지털 증거의 폐기) 디지털증거관리책임자 등은 디지털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 해당 사건 담당수사관의 폐기 요청이 있으면 해당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여야 한다.</p>  |
| <p>「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찰청예규 제991호, 전부개정·시행 2019.5.20.)<br/>제8장 디지털 증거의 폐기<br/>제34조 (디지털 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 범죄사실과 무관한 디지털 증거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br/>제35조 (폐기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1. 해당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등 종국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br/>2.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압수대상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p> |



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는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 (폐기요청)**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폐기는 주임검사 또는 승계검사가 요청할 수 있고,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폐기는 압수전담검사가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폐기절차)** ①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폐기를 진행한다.

1. 주임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시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는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폐기촉탁지휘를 한다.
2. 사건 처분 결과가 기소중지 및 참고인 중지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2조(기소중지처분·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의 압수물처분)를 준용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3.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디지털 증거로서 법원의 결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되지 아니한 디지털 증거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2조(기소중지처분·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의 압수물처분)를 준용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4. 폐기촉탁지휘를 받은 압수물담당직원은 KICS의 압수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디지털수사과장에게 해당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폐기를 요청한다.
5. 디지털수사과장은 폐기를 요청 받은 디지털 증거를 지체 없이 폐기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디지털증거 폐기(촉탁) 회보서"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압수물담당직원에게 회보한다.

**제38조 (유죄확정 판결에 대한 특례)** 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재심청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보존할 수 있다.

- ② 판결 확정 이후 당사자의 폐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를 폐기한다. 다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의 폐기요청이 있을 경우에 폐기한다.
- ③ 내란죄, 외환죄 등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죄의 디지털 증거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제3항을 준용하여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제39조 (폐기점검)** ① 디지털수사과장은 매년 반기별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폐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② 디지털수사과장은 주임검사 처분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압수물로 수리되지 아니한 디지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요청 부서별로 그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송부하고 1개월 내에 압수물로 수리한 후 그 결과를 회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압수물로 수리할 것을 촉구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압수물로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부서장과 협의하여 디지털 증거를 삭제할 수 있다.

|      |     |       |     |
|------|-----|-------|-----|
| 전문위원 | 김태한 | 입법조사관 | 최문숙 |
|------|-----|-------|-----|